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윤종도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윤종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9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윤종도, 김창규, 이홍희,
김정숙, 남진복, 황이주,
이진락, 김명호, 이동호,
김봉교, 김희수, 나기보
의원 (12명)

찬 성 자 : 안희영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토종농작물 품종 보존·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경상북도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관리 및 소비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보급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과 생산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지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업무담당국장, 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인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이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소비활성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 2017.9.22.]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 나. 삭제 <2016.12.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孢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6.12.27.>

[시행일 : 2017.6.28.] 제2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 2017.6.28.] 제3조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검 토 의 건 서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혁신법무담당관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덕환
입 안 주 무 부 서	친환경농업과	통 보 (조 치) 일	2017. 8. 3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 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검 토 의 견 서

실 · 과	주요내용 (조항)	검 토 의 견
친환경농업과		의견없음
농업기술원	보존·육성 계획 수립(제4조)	◦ 보존·육성 및 보급 등의 대상을 ‘토종농작물의 품종’ 으로 표기할 경우, 조례안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토종농산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임. 또한, 품종이라는 용어는 이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업성을 내포할 뿐 아니라 작물의 종류에 따라 품종 등록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수정내용> -(제4조 제1항)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 및 보급” →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보급” -(제4조 제2항 2호)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보급” →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보급”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은 경상북도 토종농작물의 조사 및 재배 또는 보존·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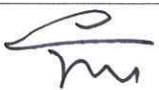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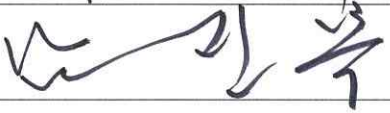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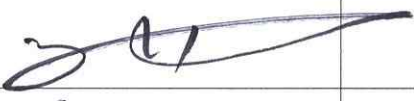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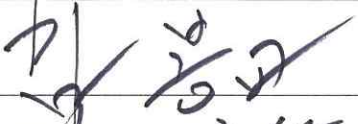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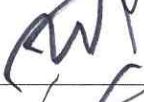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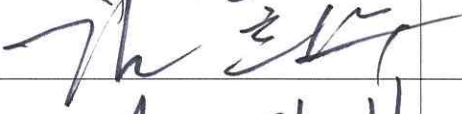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보존·육성 계획 수립), 제7조(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사업)의 내용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친환경농업과 행정7급 박현숙
(054-880-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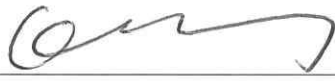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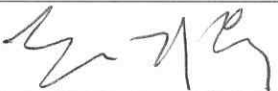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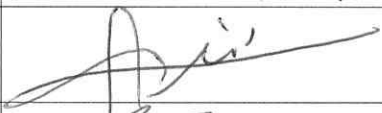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유 증 도		
김 창국	김 창국	
이 흥 회	이 흥 회	
김 경 복		
		
함 이 주		
이 진 각	이진각	
김 명 훈	김명훈	
이 종 훈		
		
		
나 시 분		

찬성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한 희 예		
이 상 구		
배 진 석		
남 호 린		
노 기 욱		
김 지 석		
배 영 역		
최 수 욱		